## 1. 개정이유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독업의 지위승계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독업 지위승계신고 절차와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절차를 정비하고,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기관에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허가서 등의 영문 서식 신설(안 제20조의2제2항·제4항, 제20조의3제2항·제4항 및 제20조의4제2항, 안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설)

영문 서식에 대한 발급 수요를 반영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의 변경신고확인서의 영문 서식을 신설함.

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절차(안 제20조의8제2항 신설)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을 받으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절차(안 제38조의2 및 안 별지 제26호의2 서식 신설)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독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영업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지위승계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소독업자 등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안 제41조제4항 신설)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에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감염병 차단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 대한 통지 예외(안 제47조의2제4항 단서 신설)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그 정보 수집·제공 등에 대한 통지를 할 때 통지 대상인 정보

주체의 연락처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험병원체 바이러스의 범위 확대(안 별표 1 제2호머목)

고위험병원체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험병원체 바이러스의 종류 중 인체 유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를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확대함.

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안 별표 11 Ⅱ 제2호의2 신설)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2. 9. ~ 3. 23., 6. 4. ~ 7. 14., 10. 6.

~ 10.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소독업의 체계적 관리)

보건복지부령 제 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5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별지 제15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별지 제15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20조의8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을 “질병관리청장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보유허가를 하기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예방접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법·용량 등을 따른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독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했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독업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 또는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소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신고”를 “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로,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이”를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교육기관에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의 소독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교육기관은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전단의 확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지 대상자의 연락처 및 전자우편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본문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에는 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4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머목 본문 중 “조류 인플루엔자”를 “동물인플루엔자”로, “H5N1, H7N7, H7N9”를 “동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백신 후보로 인정하는 바이러스(백신 후보주)”를 “공고하는 백신

후보주는”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 1) 및 2)를 각각 2) 및 1)로 한다.

별표 11 Ⅱ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2의2.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2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별지 제7호의5서식 중 분양하는 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분양하는 기관 | 기관(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별지 제13호의3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4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5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5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머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Permit No.(Report Confirmation No.)

#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High-risk Pathogen Handling Biosafety Facility

**[ ] Permit**
**[ ] Certificate of Report**
**[ ] Permit for Amendment**
**[ ] Certificate of Report on Amendment to Permitted Matters**
**[ ] Certificate of Report on Amendment to Reported Matters**

※ Please mark the applicable bracket [ ] with "√".

| | | | |
|---|---|---|---|
| Applicant | Name of Organization | | Business (Corporate) Registration No. |
| | Name of Representative | | Representative's Date of Birth |
| | Office Address | | Telephone Number |
| Permit Details (Report Details) | Installation · Operation officer | Name | Telephone Number |
| | Biosafety Officer | Name | Telephone Number |
| | High-risk Pathogen Administrator | Name | Telephone Number |
| | Type of Facility<br>[ ] General [ ] Large-scale [ ] Animal Use [ ] Insect Use | | |
| | Facility Address and Area($m^2$) | | |
| | Biosafety Level | | |
| | Pathogen Handled | | |
| | Conditions of Permit (Report) | | |

Pursuant to Article 23(2), (3), and (4)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19-2(4) and (6), Article 19-3(2) and (5), and Article 19-4(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0-2(2) and (4), Article 20-3(2) and (4), and Article 20-4(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the following is hereby approved/confirmed with respect to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high-risk pathogen handling facility

[ ] The permit application is hereby approved.
[ ] The report (including reissuance) is hereby confirmed.
[ ] The amendment to the permitted matters is hereby approved.
[ ] The amendment report for the permitted matters is hereby confirmed.
[ ] The amendment report for the reported matters is hereby confirmed.

/ date / month / year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Official Seal

210㎜× 297㎜(백상지 12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 소독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7일 |
|---|---|---|---|
| | | | |

| | | |
|---|---|---|
| 승계를 하는 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승계를 받는 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영업소 | 명칭(상호) | 승계 전 | 승계 후 |
| |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 신고증 발급번호 | |
| 승계사유 | [ ] 상속 [ ] 영업양도 [ ] 합병 [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b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br>[ ]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br>[ ] 그 밖의 사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고인 제출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br>※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 2.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 3.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본인정보 제공요구 자료 | | [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지위승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b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본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서류(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 방법

1. 승계를 하는 자: 피상속인, 양도인, 합병 전 법인 등 소독업자 지위를 승계해주는 자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승계를 받는 자: 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법인 등 소독업자 지위를 승계받는 자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소독업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0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① (생 략) | 제20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① (현행과 같음) |
| ② 영 제19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② ---------- 별지 제15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말한다)---.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영 제19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④ ---------- 별지 제15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말한다)----. |
| 제20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 제20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① ---------- 별지 제15호의3서식-------. |
| ② 영 제1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② ---------- 별지 제15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 |

| | |
|---|---|
| | 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말한다)-----. |
| ③ 영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 ③ ---------- 별지 제15호의3서식------. |
| ④ 영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④ ---------- 별지 제15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말한다)-----. |
| 제20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 제20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① ---------- 별지 제15호의3서식------. |
| ②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② ---------- 별지 제15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말한다)-----. |
| 제20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 제20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① ---------- 별지 제15호의4서식------. |
| ② 영 제19조의5제2항 후단에 | ② ---------- |

| | |
|---|---|
| 따른 폐쇄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4서식과 같다. | ---------- 별지 제15호의5서식------. |
|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① (생략) |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보유허가를 하기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보유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br>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 ③ ~ ⑥ (생 략) | |
|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예방접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법·용량 등을 따른다. |

| | |
|---|---|
|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 |
| <신 설> | 제38조의2(소독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독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br>2.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br>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받은 |

| | |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br>④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

| | |
|---|---|
| |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소독업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 또는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업의 지위승계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소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 ③ ----------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이 ----------. |

| | |
|---|---|
| <신 설> | ④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교육기관에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의 소독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교육기관은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전단의 확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
| ④ (생 략)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① ~ ③ (생략) |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단서 신설> | ④ ----------<br>----------<br>----------<br>----------<br>---. 다만, 통지 대상자의 연락처 및 전자우편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본문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 | |
|---|---|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에는 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
| 제48조(규제의 재검토)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8조(규제의 재검토)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소독의 대상: 2014년 1월 1일 | <삭 제> |
| 7.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소독의 방법: 2014년 1월 1일 | <삭 제> |
| 8. 삭 제 | |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